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-567호

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63호(2008.7.31.)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36호(2010.04.15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33호(2015.8.6.)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-35호(2010.4.30.) 사업시행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-52호(2011.7.4.)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-84호(2015.5.21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『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』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27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: 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의 명칭: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사업시행자

가. 주 소: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 삼부아파트 105동 상가201호, ☎(02-911-5130)

나. 성 명: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

3. 공람기간: 2017. 4. 27. ~ 2017. 5. 12.(15일간)

4. 공람장소

가.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52)

나.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02-911-5130)

5. 공람·공고 내용

가. 사업명칭: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
나. 위 치: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42-1번지 일대

다. 시행면적: 13,449㎡

라. 시행기간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

마. 건축계획: 지하5층/지상35층, 2개동, 공동주택 395세대 및 부대복리·판매시설

바. 정비기반시설: 도로 1,886㎡, 공원 1,244㎡

6. 변경내용

구 분		기 존		변 경		변경사유			
구역면적		택 지		9,971.0㎡		택 지	10,319.0㎡	촉진계획 변경 (2015.8.6.)에 따른 변경	
		정비 기반시설	도로	1,850.0㎡		정비 기반시설	도로		1,886.0㎡
			공원	1,628.0㎡			공원		1,244.0㎡
			소계	3,478.0㎡			소계		3,130.0㎡
		총 계		13,449.0㎡		총 계			13,449.0㎡
건 폐 율		52.56 % (60% 이하)		52.67 % (60% 이하)					
용 적 율		398.13 % (400% 이하)		399.66 % (400% 이하)					
연 면 적		72,596.45 ㎡		77,174.30 ㎡					
용적율 산정용 연면적		39,697.34 ㎡		41,241.25 ㎡					
주차대수		556 대 주거: 384 대, 비주거: 172 대		661 대 주거: 479대, 비주거: 182 대					
주택 규모 별 건설 비율	조합/ 일반	전용면적 85㎡ 초과	100세대	전용면적 85㎡ 초과					
		전용면적 60~85㎡	97세대	전용면적 60~85㎡	55세대				
		전용면적 50~60㎡	16세대	전용면적 50~60㎡	257세대				
		소 계	213세대	소 계	312세대				
	임 대	전용면적 60~85㎡	7세대	전용면적 60~85㎡	4세대				
		전용면적 50~60㎡	8세대	전용면적 50~60㎡	15세대				
		전용면적 40~50㎡	24세대	전용면적 40~50㎡	32세대				
		전용면적 40㎡ 이하	24세대	전용면적 40㎡ 이하	32세대				
		소 계	63세대	소 계	83세대				
	합 계		276세대	합 계	395세대				

7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공 란 의 견 서

사 업 명	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	
공 란 기 간	2017년 4월 27일 ~ 2017년 5월 12일		
대상물건지	건물 :		
	토지 :		
의견제출인	성 명	(인)	생년월일
	주 소		전 화 번 호
내 용			

2017. . .

인 사

《발령 제101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송 인 심	복 직 을 명 함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 근무를 명함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주 사 보

(2017.04.19.일자)

《발령 제 102 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오 영 창	석 관 동 근 무 를 명 함	행정지원과	지 방 운 전 주 사 보
2	박 윤 호	행정국 행정지원과 근무를 명함	석 관 동	지 방 운 전 서 기 보 시 보

(2017. 4. 19일자.)

《발령 제103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김 선 형	행정국 행정지원과 지원근무를 명함 (2017.04.24.~별도시지시까지)	복지정책과	지 방 행 정 주 사 보
2	장 일 권	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근무를 명함 (2017.04.24.~별도시지시까지)	행정지원과	지 방 행 정 서 기

(2017.04.24.일자)

《발령 제 104 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조 은 영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연장을 명함 (2017.04.24.~2018.04.23.일까지)	행 정 국	지방시설주사보 (토 목)

(2017.04.24.일자). 끝.

